

2004년도 기초학문육성  
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 신청요강

2004. 3.

한국학술진흥재단

## 개 선 사 항

구분	2003년	2004년	비고
사업 방향	○ 연구와 교육의 연계 강화	○ 연구와 교육의 연계 강화 - Future Korea 사업과 연계함	
지원 분야	○ 중점연구 분야 - 국학고전연구	○ 중점연구 분야 - 국학고전연구(한국학분야 영어번역 포함) ※ 한국학분야 영어번역 한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역사, 전통, 사상, 종교, 언어, 문학, 교육, 과학, 예술, 지리, 풍속 등 한국학 관련 우수 학술 저서 및 논문의 영어 번역 지원 - 한국학 분야 영어 번역은 연구기간 1년의 <u>소형과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원문을 기준으로</u> <u>원고지(200자/1매)당 25,000원으로 계상하고 출판</u> <u>관련 사항은 향후 재단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</u> <u>사업과 연계할 예정임.</u>	
지원 규모	○ 소·중·대형과제에 따라 차등 지원 (심사 후 지원규모 변경 가능)	○ 신청 연구비나 연구기간이 심사에서 축소· 조정되어 신청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(예: 대형→중형, 중형→소형 / 3년→2년, 2년→1년)	연구비 적정성 평가
신청 서류 제출		○ 연구지원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신청관련 서류 파일 탑재	번역 및 역주과제 제외
연구전 임인력 (박사급 연구원)	○ 책임급: 박사학위 취득 후, 연구업적 2편 이상(2,400만원) ○ 선임급: 박사학위 소지자(2,000만원)	○ 박사급 연구원 단일화 (박사학위 소지자, 2,400만원)	박사급 구분 단일화

구분	2003년	2004년	비고
면담 심사	○ 심사대상 : 중형과제 이상 및 전공심사 결과 필요한 과제	○ 심사대상: 중형과제 이상 및 전공심사 결과 필요한 과제, <u>신청액 대비 조정을 30% 이상인 과제</u>	면담 심사 대상 확대
간접 연구비 지원 비율	○ A등급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10%지원 ○ B등급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8%지원 ○ C등급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5%지원 ○ 등급외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3%지원	○ A등급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<u>15%</u> 지원 ○ B등급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<u>10%</u> 지원 ○ C등급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5%지원 ○ <u>기타</u> 기관 : 지원결정 연구비의 3%지원	지원 비율 상향 조정
기타 사항	○ 4대보험료 미지급 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보험)	○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지급	
		○ 사유서 입력 - 연구기기 구입시 관련사항 (학술단체는 향후 활용계획서 포함) 사유 입력 -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 소속자가 학술단체(학회 등) 통하여 신청할 경우 사유 입력 - 특정세부항목(인건비 제외)이 전체 연구비의 70% 초과할 경우 사유 입력	

# 차 례

I. 사업목적 및 방향	1
1. 사업목적	1
2. 지원방향	1
II. 지원개요	1
1. 지원분야	1
2. 지원예산	2
3. 지원대상	2
4. 지원형태 및 규모	3
5. 지원기간	3
III. 신청에 관한 사항	3
1. 신청방법 및 기간	3
2. 신청자격 및 요건	6
IV. 심사 및 선정	9
1. 심사절차	9
2. 심사방법 및 내용	10
V. 연구비 및 사후관리	12
1. 연구비 지급 및 관리	12
2. 연구 중간 발표	13
3. 보고서 제출 및 평가	13
VI. 간접연구비 지급	17
1. 지원대상	17
2. 지원내용	17
3. 지원시기 및 방법	17
VII. 중점연구분야 세부지원 계획	18
1. 국학고전연구	18
2. 국내외지역연구	20
3. 한국근현대연구	22
(붙임) 연구비 산정 · 집행기준표	24

# I. 사업목적 및 방향

## 1. 사업목적

- 인문사회분야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지원하여 창조적 지식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·사회발전에 기여
- 학술연구를 계승·발전시키고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며, 학문과 대학사회의 경쟁력 강화

## 2. 지원방향

-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·분석 및 기초이론 연구 지원
- 학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 생산
-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
- 중점연구 분야에 대한 우선 지원
- 계속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강화 및 우수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
- 한국학 관련 우수 학술 저서 및 논문의 영어 번역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
- 연구결과를 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계 강화

# II. 지원 개요

## 1. 지원분야

- 중점연구 분야(※ 세부내용은 **VII.중점연구분야 세부지원계획** 참조)
    - 국학고전연구: 번역및역주, 원전자료수집및정리(한국학분야 영어번역 포함)
    - 국내외지역연구: 국내지역연구, 해외지역연구, 해외국학자료연구
    - 한국근현대연구: 한국근현대100년연구, 한국사회의 미래학연구, 학문의 자주적 방법론연구
  - 일반연구 분야
    - 인문·사회과학 학문 전반의 기초가 되는 연구
- ※ 편람, 사전편찬, 교재개발, 전람회,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
- ※ Future Korea 사업과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아래 신청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 Future Korea 사업 신청 안내

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의 선정과제 중 수행된 연구 내용을 초·중·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가공 및 변환하여 현장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니, **“Future Korea 사업 신청요강”**을 참고하신 후 본 사업 과제 신청서 추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 신청과제의 연구기간이 1년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.
- ※ “Future Korea” 지원 과제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타 연구사업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.

2. 지원예산: 약 300억원 (신규과제)

3. 지원대상: 공동, 학제간 연구

- 연구팀 단위
- 대학연구소 단위
- 대학연구소,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단위

구분	소형과제	중형과제	대형과제
지원 대상	연구팀 대학연구소	연구팀 대학연구소	대학연구소 대학연구소간 컨소시엄 대학연구소+기관/단체 컨소시엄
	학술연구기관·단체(학회)		

- ※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포함
- ※ 컨소시엄의 경우,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대학연구소이어야 함

#### 4. 지원형태 및 규모

- 소형과제 - 연간 1억 5천만원 이내
- 중형과제 - 연간 3억원 이내
- 대형과제 - 연간 10억원 이내

#### 5. 지원기간: 1 ~ 3년

- 다년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

※ 신청 연구비나 연구기간이 심사에서 축소 조정되어 신청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

(예: 대형→중형, 중형→소형 / 3년→2년, 2년→1년)

※ 지원규모별로 선정비율을 지원 예산의 소형 50%, 중형 35%, 대형 15%으로 유지

- 단, 5%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조정 가능

### Ⅲ. 신청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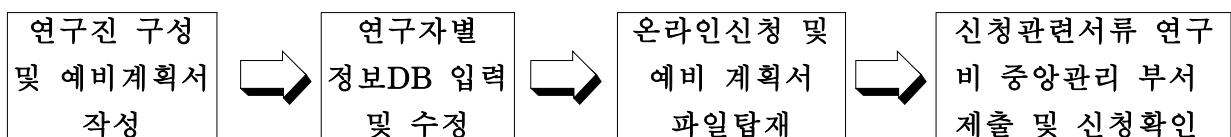
#### 1. 신청방법 및 기간

##### 가.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: 연구책임자가 재단 홈페이지(www.krf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함

##### 나. 온라인 신청

##### 1) 예비계획서



## 가) 온라인 신청준비

-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을 구성한 후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선정 시 연구비 관리 여부 확인
- 각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신청자격(결과보고 미제출 등) 여부 확인 및 통합연구인력정보등록에서 개인정보 수정
- 온라인 신청기간 3일전 신청입력화면을 통해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

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,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연구계획서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

## 나) 온라인 신청 및 예비계획서 파일탑재

-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
-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과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온라인 신청 마감후, 지정된 기일내에 예비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(아래 한글(2002 버전 이하) 또는 MS 워드 중 반드시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작성하여야 함)
- ※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사전에 입력바람

## 다) 온라인 신청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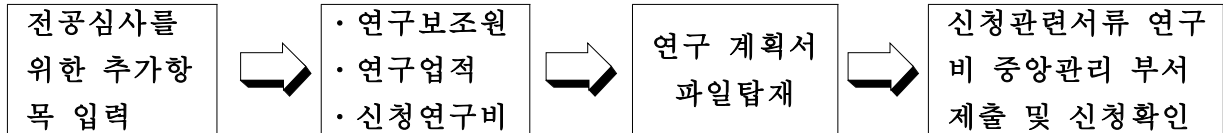
- 연구책임자
  - 입력내용(예비계획서 포함)을 출력하여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
-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
  - 온라인 신청 확인기간: 2004. 3. 24(수) 09:00 - 25(목) 18:00까지
  -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소속 연구자들의 온라인 신청여부를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이 안된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. 또한 신청과제의 예비계획서, 신청현황 및 명단 보관



라) 온라인 신청기간: 2004. 3. 2(화) 09:00 - 3. 19(금) 18:00까지

마) 예비계획서 파일 탑재기간: 2004. 3. 22(월) 09:00 - 3. 23(화) 18:00까지

## 2) 연구계획서(예비심사통과자에 한함)



### 가) 온라인 입력전

-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까지의 재단 통합 연구인력정보 DB를 활용하므로, 신청자는 통합연구인력정보등록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, 수정하고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입력하여야 함
- 연구계획 수립시 연구기기 구입이 필요 할 경우 사전에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동일 또는 동종 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여야 함

### 나) 온라인 입력

- 연구업적 선택시 가장 우수한 업적 2편만 선택하여 입력함
    - 단, 국학고전 및 국내외지역연구분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본 신청요강 III-2. 신청자격 및 요건, 가 항에 의거하여 소명서를 입력함
  - 연구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후 활용계획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입력함
  - 연구비 산출시 특정 세부항목(연구참여 수당 제외)이 전체 연구비의 70%를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입력함
  -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 연구기기 및 문헌구입비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,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서(비치 장소, 사용계획, 연구종료 후 활용계획 등)를 입력함
  - 온라인 입력기간 중에는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나 입력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
- ※ 연구계획서 파일은 한글 2002 버전 이하로만 탑재하여야 함.
- ※ 예비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공심사 온라인 입력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## 다) 온라인 입력후

- 연구책임자
  - 입력내용(연구계획서 포함)을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
  - ※ 단, 국학고전연구분야 번역 및 역주과제, **한국학분야 영어번역과제**의 경우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됨
  - 번역대상도서의 원문사본 및 번역원고(목차포함, A4 15매 이내) 각 5부
- 연구비 중앙관리부서
  - 온라인 신청확인 기간: 추후통보(홈페이지에 공지)
  -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공심사 신청을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이 안된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. 또한 신청과제의 연구계획서, 신청현황 및 명단 보관
  - 인건비를 신청한 박사급 연구전임인력에 한해서 4대 보험(건강, 고용, 산재, 국민연금)에 대한 기관부담금 신청은 연구비 중 인건비 항목에 산정하되 사전 연구책임자와 신청 기관장과의 협의후 입력하여야 하며 최종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의 확인사항을 기준하여 지원할 예정임
  - ※ 4대 보험료의 기관부담금 신청금액은 전체 연구비에 포함하여 계상함

## 2.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가. 신청자격
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규정의 해당자 중
  - ① 국내의 대학(대학부설연구소 포함) 또는 그 소속 교원
  - ② 국내의 학술연구기관·단체 또는 그 소속 연구원
  - ③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·예술활동을 지원 받는 과학자·예술가 또는 그 단체
  - ④ 대학의 시간강사
  - ⑤ 국내의 대학등의 기관에서 연수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
  - ⑥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위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

구분		참여자격
연구책임자		연구업적 2편 이상
공동 연구원	일반	연구업적 2편 이상
	연구전임인력 (박사급연구원)	박사학위 소지자

※연구업적: 199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, 등록 완료된 특허 및 출간된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

- 한국근현대연구 및 일반연구분야 연구책임자의 경우 2편의 연구업적은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A&HCI급, SSCI급, SCI급(SCI 및 SCIE)등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, 등록 완료된 국내외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등의 연구실적이어야 함

※ 연구업적 산정시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인정 (단, 공동 저서 및 역서는 1편으로 인정)

- 중점연구분야 중 국학고전 및 국내외지역연구의 경우,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함(온라인 신청시 소명내용 입력)
  - 연구전임인력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가 참여 가능함
  - 특수영역의 경우 연구업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도 인정함

## 나. 연구진 구성

- 연구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전임인력 및 연구보조원이 최소한 참여하여야 함.

구분		자격	소형 과제	중형 과제	대형 과제
연구책임자		가항의 연구업적을 갖춘 자	1명		
공동 연구원	일반	가항의 연구업적을 갖춘 자	제한없음		
	연구전임인력 (박사급연구원)	가항의 연구업적을 갖춘 자	2명	5명	10명
연구보조원		전문학사·학사·석사·박사 과정중에 있는 학생	2명	10명	20명

- ※ 연구전임인력은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업(Full-Time)으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(전업자의 경우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하여야 함.)
- ※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, **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시까지 인정함**(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).
- ※ 해외지역연구의 경우,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연구전임인력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원(일반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)만으로 연구팀을 구성할 수도 있음.

#### 다. 신청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연구전임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의거 연구원으로 임명(고용계약서 체결)되어야 하고 상근하여야 함
- 연구전임인력 1인당 1.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
- 1인 이상의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연구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함.
- 지원형태별 특이사항
  - 컨소시엄의 경우, 주관기관은 대학연구소이어야 함
- 위 사항들은 선정 후 실사를 통해 확인

#### 라. 연구비 신청 제한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(단,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
-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및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강의파견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중복되는 자
-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,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연구계획서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
-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 단위의 연구비를 지원 받고 소정의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부설연구소 및 신청제한 기한 내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

#### 마. 연구참여 제한

- 본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.(중복 신청 불가)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.

단,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4.12.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,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.
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(BK)21사업 참여자(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은 제외)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.
- ※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.

## IV. 심사 및 선정

### 1. 심사절차

단계별	심사구분	심사내용	비고
1단계	요건심사	- 신청자격 여부	재단
2단계	예비심사	- 창의성 및 적합성 - 학문발전 공헌도	예비심사단
3단계	전공심사	- 독창성, 공헌도 - 연구내용 및 방법 - 선행연구, 연구역량 - 연구비 적정성 등	전공 및 면담심사단
4단계	면담심사	- 발표, 질의 및 토론	
5단계	종합심사	- 3·4단계 심사내용 검토 - 예산배정 및 과제 선정	인문사회분과위원회

※ 단, 국학고전연구의 번역과제에 대한 심사절차는 VII. 중점연구분야 세부지원계획 참조

## 2. 심사방법 및 내용

### 가. 제1단계 심사 (요건심사)

- 심사방법: 전산시스템에 의한 상호확인 심사
- 심사내용: 신청요강에 의한 행정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

### 나. 제2단계 심사 (예비심사)

- 심사방법: 합의제 패널심사
- 심사내용: 연구과제의 창의성, 학문발전의 공헌도, 적합성
- 심사항목 및 배점: 채택 또는 탈락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연구과제의 창의성	- 연구과제의 주제와 방법이 독창성이 있는지의 여부
2. 학문발전의 공헌도	- 학문발전 및 사회발전의 공헌도
3. 연구과제의 적합성	- 사업목적과의 부합 여부

※ 2단계 심사 통과 과제에 한하여 3단계 심사 실시

### 다. 제3단계 심사 (전공심사)

- 심사방법: 패널심사

- 심사내용: 연구업적,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, 실질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
- 심사항목 및 배점: 6개 항목 100점

구분	심사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 예시
연구주제	독창성	연구주제의 독창성	○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○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○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
		연구방법의 독창성	○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○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(도구)을 시도하는가 ○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
	학문발전 공헌도	학문적 가치	○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○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
		학문의 균형발전	○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○ 소외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
		학문의 파급효과	○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○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○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
실현가능성	연구 내용 및 방법	연구내용의 적절성	○ 공동연구주제로서 적절한가 ○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○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○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
		연구방법의 타당성	○ 공동연구에 타당한 연구방법인가 ○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○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○ 자료분석(실험 또는 이론계산)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
		실행계획의 구체성	○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○ 자료수집, 분석,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
	선행연구	선행연구의 검토	○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
		참고문헌	○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
	연구역량	연구진 구성	○ 연구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○ 연구 보조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○ 연구여건(시설, 기자재 등)이 충분한가
		연구실적	○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
		연구능력	○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○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
	연구비 적정성	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규모	○ 각 항목별로 조정 액수를 쓰고, 그 일치 정도를 비율로 환산한다. ※ 각 항목별로 조정액수를 쓰고 신청액 대비 조정을 10%마다 5점 만점에 1점 비율로 감점

\* 지원분야의 특성에 따라 측정지표 및 심사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## 라. 제4단계 심사 (면담심사)

- 심사대상: 중형과제 이상 및 전공심사결과 필요한 과제, 신청액 대비 조정을 30% 이상인 과제
- 심사내용
  - 연구진의 연구수행 의지
  - 패널심사에서의 미확인 또는 의문 사항 확인
  - 연구계획서 조정가능성 확인(연구범위, 연구기간, 연구비 등)
- 심사방법: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
- 심사항목 및 배점: 전공심사와 동일

#### 마. 제5단계 심사 (종합심사)

- 심사내용
  - 전공심사 및 면담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
  - 예산배정
  - 선정기준 확정
- ※ 필요한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기관이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

※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

### V. 연구비 및 사후관리(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약서 및 관리지침 참조)

#### 1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
가. 지급방법: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

#### 나. 지급시기

-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 연구비 지급
- 다년과제의 경우 1년 단위로 중간보고 평가 후 지원결정 연구비 지급

다. 연구비 사용: 연구책임자의 신청기관(연구수행기관)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



## 라. 연구비 관리

-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 
단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
  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  -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 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
  -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  -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
  -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 또는 협약서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
## 2. 연구 중간 발표

가. 발표시기: 연구개시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일 까지(연차별 1회 이상)

나. 발표방법: 발표형식은 제한 없음(학회, 대학자체의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워크샵, 세미나, 사이버 토론 등)

※ 연구자는 중간발표보고서(재단 소정양식)를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

## 3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
가. 제출 방법: 온라인 제출

### 나. 중간보고서

(1) 연구과제 수행지원 평가

연구내용 및 연구비 집행실적 등 연구수행과정을 연구자 스스로 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(연구계획 대 실적)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.

(2) 제출시기

- 1년 연구과제: 제출 생략

- 다년 연구과제: 연차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(재단 소정양식)
- (3) 중간보고서 평가
  - 평가대상: 다년과제
  - 평가주관: 중간보고서 평가단 및 해당 위원회
  - 평가방법
    - 제1단계 평가: 서면평가
      - 평가내용: 전년도 연구계획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평가
    - 제2단계 평가: 면담평가
      - 평가대상: 중형이상 과제 및 서면평가 결과 필요한 과제
      - 평가내용: 중간보고서 평가 내용에 대한 확인
    - 제3단계 평가: 종합평가
      - 평가내용: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 결과 검토
      - 평가결과: 계속지원, 지원중단,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결정
- ※ 연구진행에의 협조도 등을 인센티브에 반영

#### 다. 연구결과보고서

- (1) 제출시기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- (2) 제출방법: 온라인 제출
- (3) 제출자료
  - 중간발표보고서
    - 다년과제의 경우 매년 발표회 실적(예 : 3년과제는 3회이상의 실적)을 제출
  - 연구결과보고서(재단 소정양식)
  - 연구결과 개요보고서(연구비 집행 정산내역 포함)
  - 연구요약문(국, 영문)
    -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- ※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, 음성자료,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,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

(4)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‘연구결과보고서’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포함) 신청을 제한함.

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.

라. 최종 연구결과물(게재논문 또는 저서) 제출

(1)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무

- 모든 연구과제의 수혜자는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(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(A&HCI급·SSCI급·SCI급) 학술지)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.

(2)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시기

- 국내·외 학술지, 전문학술저서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- 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
- 단, 번역 및 원전정리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6개월 이내에 출판함(※ 한국학분야 영어번역은 평가 후 1년 이내에 출판함)
-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  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(KRF-2004-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)”
  -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(KRF-2004-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)”
- ※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
(3) 최종 연구결과물(게재논문 또는 저서)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최종 연구결과물을 국내·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평가결과 D급과 동일하게 적용함
- 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단의 소정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 C, D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) 지원을 일정기간(C급 3년, D급 5년) 제한함.
- 당초 계획된 연구결과의 미도출로 논문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제출받아 성실성과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함

#### 마. 최종 연구결과 사후 관리

- 연구결과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  -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  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- 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”과 “기술이전촉진법”에 의해 국공립 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‘산학협력단’ 또는 ‘기술이전 전담조직’의 소유로 함
-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‘산학협력단’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
  -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
-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
- ※ 단,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,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.

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 박탈

#### 바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

-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기초학문(인문사회분야)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보고서, 특허, 기술, 발명, 세계인명사전 등재, 언론보도, 인력양성 실적 등)을 게재하여야 함.

## VI. 간접연구비 지원

1. 지원대상 :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(교) 및 학술단체

### 2. 지원내용

#### 가. 지원기준

- 2003년도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

#### 나. 지원비율

- A등급 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15%
- B등급 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10%
- C등급 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5%
- 기타 기관: 지원결정 연구비의 3%

3. 지원시기 및 방법: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시 연구주관기관에 일괄 지급

### 문의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 
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부  
기초학문지원 1팀 : (02)3460-5593~7, FAX (02)3460-5607  
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

## VII. 중점연구분야 세부지원계획

### 1. 국학고전연구

#### 가. 지원목적

- 한국고전자료의 체계적인 번역 및 수집정리
- 민족문화유산 및 한국학의 세계화

#### 나. 지원방향

- 국학관련 고전자료의 번역(외역포함)
- 학문적 가치가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지원
- 고전번역에 필요한 원전정리에 대한 병행지원
- 연구와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가와 학문후속세대 인력양성
- 한국학 분야 우수 학술 저서 및 논문의 영어 번역

#### 다. 지원대상 및 분야

- (1) 지원대상: 국학자료 중심 (연계성이 있는 동양권 자료 포함)
  - 전적류(典籍類): 經, 史, 子, 集部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
  - 고문서(古文書): 郷土史料, 官府文書, 門中所藏資料 등 전통문화자료
- (2) 지원분야
  - 번역 및 역주
  - 원전자료 수집 및 정리(목록 및 색인, 해제)

※ 한국학 영어번역 분야: 한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역사, 전통, 사상, 종교, 언어, 문학, 교육, 과학, 예술, 지리, 풍속 등 한국학 관련 우수 학술 저서 및 논문의 영어 번역 지원

#### 라. 지원규모

- 지원형태(소·중·대)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,  
[번역 및 역주 과제]
  - 번역비는 원고지(200자/1매)당 10,000원으로 계상하여 산정하되, 연구전임인

력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(별첨)에 의거하여 번역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. (번역비에는 운문교열비, 교정, 감수비, 제잡비 등 포함)

- 번역 예상원고매수를 예비계획서 및 연구계획서에 필히 기재하여야함.

※ 단, 원전정리과제는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대로 작성함

※ 한국학 분야 영어 번역은 연구기간 1년의 소형과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원문을 기준으로 원고지(200자/1매)당 25,000원으로 계상하고 출판관련 사항은 향후 재단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 사업과 연계할 예정임.

#### 마. 번역 및 역주과제 심사 (원전자료수집정리과제의 경우, 공통사항 적용)

○ 1차 (예비계획서 심사)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연구과제의 창의성	- 연구과제의 주제와 방법이 독창성이 있는지의 여부
2. 학문발전에의 공헌도	- 학문발전 및 사회발전에의 공헌도
3. 연구과제의 적합성	- 사업목적과의 부합 여부

※ 심사 통과 과제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실시

○ 2차(연구계획서 심사)

- 심사배점 및 항목: 4개 항목 100점

심사항목	측정지표
1. 번역업적의 수준	○ 번역참여자의 업적실적 수준
2. 번역수행능력	○ 번역참여자의 번역능력 ○ 번역연구진 구성의 적절성
3. 번역목적	○ 번역의 필요성 ○ 번역의 차별성 (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)
4. 번역결과의 활용	○ 번역결과의 학문적, 사회적 기여도 ○ 번역결과의 교육현장에의 활용방안

## 2. 국내외 지역연구

### 가. 지원목적

- 국내 지역 연구를 통해 학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에 활용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
- 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자료의 발굴·조사·연구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 확립
-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의 기초, 경제·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

### 나. 지원방향

- 해당 지역에 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서 현재적 의의가 큰 주제에 대해 지원
-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심층적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, 현지 기관과의 협력연구 등 현장에 근거한 연구과제를 우대
- 학제적 성격이 강한 공동연구 지원 강화
-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참여, 국내외 연수 활용 등을 통한 지역연구인력 양성
- 특정지역 연구 편중을 배제하고 국내외 권역별로 고른 지원을 지향

### 다. 지원분야 및 방식

#### (1) 지원분야

- 국내 지역연구: 학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각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
- 해외 지역연구: 학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
- 해외국학자료 연구: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 확립에 기여하며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외 국학 자료에 대한 발굴, 수집 및 연구

※ 새로운 관점 및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, 국책연구소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, 정책보고서류의 주제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



(2) 지원방식

- 국내 지역연구: 국내 지역을 8~10개 권역으로 구분
  - 서울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도, 경상도, 전라도, 제주도, 북한 지역 등
- 해외 지역연구: 세계를 5~6개 권역으로 구분
  - 아시아(오세아니아 포함), 아프리카·중동, 유럽, 북미, 중남미 지역 등

### 3. 한국근현대연구

#### 가. 지원목적

- 한국 근현대 100년 이전과 그 이후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5000년 민족사의 혈맥을 잇고자 함.
-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통제에 의하여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실상을 파악함으로써, 이를 토대로 자주적인 학문연구를 진흥하고자 함.
- 인류역사에서 경험하고 추구했던 가치의 문제가 압축·내재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 역사의 재조명을 통하여 한국이 인문사회과학의 보고임을 인식하고자 함.

#### 나. 지원방향

- 학문분야별 한국 근현대 100년 사료 개발 및 연구 지원
- 단일 사례의 다 학문적 종합연구 지원
- 학술적 가치가 높은 원자료(Raw Data)의 수집 및 1차 정리 연구 지원
- 특정 역사적 사건 및 현상의 실증적 심화연구 지원
- 한국사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, 그 모델을 제공하는 연구 지원
- 자주적 독창적 이론으로 학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연구 지원
-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통한 학술연구기반의 조성

#### 다. 지원분야

- **한국 근현대 100년 연구**
  - 한국 근현대 100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.  
단,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인문사회과학과 연계한 연구도 가능함(예: 한국과학기술변천사 연구, 과학철학사 등)
- **한국사회의 미래학 연구**
  -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국가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국 근현대 100년의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분야
  - 환경, 여성, 노인, 교육, 의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발전적 대안 연구
  - 국가사회의 발전, 남북통일, 국제갈등의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및 학술적 연구

○ 학문의 자주적 방법론 연구

- 자주적 방법론 연구를 통한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한국의 독창적 이론으로 학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분야
- 학문의 자주적 방법론을 통한 이론 연구
- 한국사회 전반의 토착화 및 창조적 연구

(붙임)

2004년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

항 목	내 용	산정·집행기준
①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참여 수당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보조원 수당</li> <li>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·학사·석사·박사 과정생</li> <li>- 박사급 연구전임인력 수당</li> </ul> </li> <li>• 4대 보험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, 고용, 산재, 국민연금의 기관부담금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사과정생 : 연240만원 이내/1인당(월 20만원)</li> <li>- 석사과정생 : 연480만원 이내/1인당(월 40만원)</li> <li>- 박사과정생 : 연720만원 이내/1인당(월 60만원)</li> </ul> </li> <li>○ 박사급연구원 :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전임인력 : 연2,400만원/1인당</li> <li>※4대 보험료 : 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의 8~9% 내에서 기관해당요율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
② 연구 활동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활동비</li> </ul>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	-연300만원/1인당 이내 *연구참여 수당을 신청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관리운영비</li> </ul> 연구진(연구보조원 포함)의 관리에 필요한 제경비	-연구전임인력 5인 이상 포함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연200만원 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회의비</li> </ul>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, 세미나 개최, 국내외 정보D/B 네트워크(DNS)사용료, 해외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 등	-실제 소요액 ※국학교전연구 원전정리과제의 경우에는 윤문교열비를 포함할 수 있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비</li> </ul>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	-국내 여비는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, 인원,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-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(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</li> </ul>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 인쇄, OHP 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,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	-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요금 등 잡비</li> </ul>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보험금, 각종 수수료 등		
③ 직접 성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사연구비</li> </ul>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(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포함)	-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헌구입비</li> </ul>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	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료구입비</li> </ul>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, 기구, 소모성 재료,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	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비사용료(임차료)</li> </ul>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기기)의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사용료)	-대내·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기기비</li> </ul>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기자재(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)	-품목,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-실제 소요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(특허출원비)</li> </ul>	-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(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한함)

- ※ 연구전임인력은 본 사업에서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, 다만 본 사업 이외의 재단 여타 사업의 과제에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활동비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.
- ※ 여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.
- ※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
- ※ 연구비 신청시에 특정 세부항목(“연구참여 수당” 제외)이 전체 연구비의 70% 초과시는 사유서 제출
- ※ 학술단체의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기자재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서(비치장소, 사용계획, 연구종료 후 활용계획 등)를 연구지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.

<양식 #1>

※ 접수번호	On-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과제번호	입력안하셔도 됩니다.
--------	-------------

##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예비계획서

(사업명 :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)

연구영역	※ 과제의 연구영역을 중점연구분야 (국학고전연구, 국내외지역연구, 한국근현대연구), 일반연구분야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십시오.					
연구규모	연구기간	년	과제규모	소형과제	중형과제	대형과제
			참여인원 (연구보조원 제외)	총		명
연구과제명	국 문					
	영 문					

### □ 작성요령

- 분량 : A4 용지 20매 이내
- 규격 : 글자크기 12포인트, 줄간격 160%
- 형식 : 자유롭게 작성

※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

## 1. 연구의 목적

(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.)

## 2. 연구내용

(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에 대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)

## 3. 연구방법

(연구방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.)

## 4. 기타사항